

건설교통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안

건설교통부는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자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3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할 자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30억원 미만 공사는 소속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체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지방청과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자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차이점을 갖고 있다.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수행능력평가(만점 30점) 기준을 보면 시공경험 평가의 경우 조달청이「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시공실적으로 당해 공사규모대비 200% 이상의 경우 만점(15점)」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건설교통부는「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대비

100% 이상을 만점(10점)」으로 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 신규등록업체는 시공실적이 없어 적격심사제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의 해소 방안으로 실적 배점비율을 축소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신규업체들을 배려하기 위해 기술능력 평가부분을 신설했는데, 기술능력평가는 다음과 같이 A~E등급으로 구분했다.

A 등급(8점) : 등급계수 6점 이상, 20인 이상 보유.

B 등급(7점) : 등급계수 5점

이상, 16인 이상 보유.

C 등급(6점) : 등급계수 4점 이상, 12인 이상 보유.

D 등급(5점) : 등급계수 3점 이상, 10인 이상 보유.

E 등급(4점) : 등급계수 2점 이상, 6인 이상 보유.

여기서 등급계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건설업무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로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해당공종 기술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등급계수를 곱해 산정토록 했다.

등급계수는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로 정했다.

보유기술자는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해당공종 기술자 및 일반기술자를 포함시켰다.

이같은 기술능력평가는 조달청에는 없는 제도로 시공실적이 부족한 건설업 신규등록업체의 적격심사제 반대 여론 해소방안으로 도입했으며, 세부기준은 PQ심사기준을 인용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경영상태평가의 경우 만점을 12점으로 해 조달청의 15점보다 3점을 줄였다(표 참조).

10억원 미만 공사수행능력평가(만점 20점) 기준을 보면 시공경험평가의 경우 조달청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시공실적으로 당해공사 대비 200% 이상의 경우 만점(8점)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건설교통부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 규모대비 100% 이상을 만점(8점)으로 하고 대체가 가능한 기술능력평가를 신설하고 만점을 6점으로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평가는 조달청과 같이 만점을 12점으로 했다.

이밖에 건설교통부는 입찰이 완료되면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3인 내지 5인을 선정하여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요구토록 했다. 즉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재무관이 3~5인 범위안에서 적정한 수를 산정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토록 한 것이다. 조달청은 예상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도 $\pm 3\%$ 범위(조달청은 $\pm 2\%$)내에서 15개를

하도록 했으며, 이 가운데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결정이 끝난 후 복수예비가격, 추첨가격, 예정가격 모두를 공개하게 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안 전문으로, 그중 연말결산서 검토보고서 등 별표 2-6은 생략하고 전제한다.

[표] 건교부 및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

구 분	건설교통부	조달청
수행능력평가	30점	30점
시공경험평가 - 당해 공사 규모 대비	○만점 : 10점 - 100% 이상 : 10점 - 90% 이상 : 9점 - 80% 이상 : 8점 - 70% 이상 : 7점 - 60% 이상 : 6점 - 50% 이상 : 5점 - 40% 이상 : 4점 * 최저평점은 3점	○만점 : 15점 - 200% 이상 : 15점 - 150% 이상 : 13.5점 - 100% 이상 : 12점 - 30% 이상 : 10.5점 * 최저평점은 없음
기술능력평가	○만점 : 8점 - 등급계수 8점 이상 : 8점 - 등급계수 7점 이상 : 7점 - 등급계수 6점 이상 : 6점 - 등급계수 5점 이상 : 5점 - 등급계수 4점 이상 : 4점 * 최저평점은 3점	없음
경영상태평가	○만점 : 12점 - 최근년도 부채비율 : 4점 - 최근년도 유동비율 : 3점 - 최근년도 매출액 : 3점 - 총자본회전율 : 2점	○만점 : 15점 - 최근년도 부채비율 : 5점 - 최근년도 유동비율 : 4점 - 최근년도 매출액 : 3점 - 총자본회전율 : 3점
입찰가격평가	70점	70점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건설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회계예규 등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 공사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기타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1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2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이 완료되면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3인 내지 5인을 선정,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동가인 최저입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모두를 선정 적

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자 등에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순으로 3인 내지 5인을 선정,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심사하여야 한다.

③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하여도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관련협회간 전용전산망자료 또는 관련협회에서 별도 통보·발급한 자료의 경우에는 결산기준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관리하는 자료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전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

가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적격심사 제출기한까지 당해 기관에 제출하여 확인된 자료에 의거 평가한다.

3. 경영상태의 평가자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 전체 평균비율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나.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 연도의 업체결산서(이하 “연말결산서”라 한다)에 의거 평가한다. 이 경우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자료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다. 관련협회가 없거나 공공기관에 등록된 경영상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별표2의 공인회계사 연말결산서 검토보고서를 당해 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 자료로 평가한다.

라.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 결산서를, 경영상태의 중요한 변경(유상증자, 감자, 자산재평가, 합병, 분할, 사업양

수도,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부동산 양도 및 동법에 의한 증여)이 있는 업체는 반기 또는 변경사유 발생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어도 공인회계사의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것에 한하고 그 외의 법인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이하 같다)에 근거하여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통보한 확인서 또는 별표 3의 검토보고서와 결산서를 당해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 자료로 평가한다.

마. 경영상태의 중요한 변경 중 합병, 분할된 업체 및 사업양수도(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업체의 경우에는 전 "라"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합병 등에 따른 등기일(개인사업자 일 경우 등록 변경일, 이하 "등기일"이라 한다)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면허) 관련 업체의 경영상태 자료(합병 등을 하기 이전의 업체자료)를 각각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해당 업체의 항목별 비율을 산정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

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바. 신용평가전문기관(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에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자료(기업어음신용평가서 또는 기업회사채 신용평가서)를 발급받아 당해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시공경험에 관한 자료를 당해 기관에 직접 제출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4-1 포함) 서식에 의한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실적 인정방법은 별지 3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한다.

6. 경영상태평가시의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년도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부채비율에 한하여 당해 업체의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때에는 A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심사항목에 대한 평균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7.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복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는 업

종별 경영상태의 평균비율이 다를 경우 당해 참여업체의 업종별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참여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업종의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8.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의 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공실적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9. 심사분야별로 관련협회에서 관리하는 경영상태 평균비율 등 평가자료가 없거나 공공기관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적용하며 취득점수가 가점 등으로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3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모의 합산금액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

공비율을 곱한 분자의 합산금액으로 각 심사항목별 경영상태비율을 산정한 후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2.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한다.

가. 1건 공사가 복합 등록 또는 면허(이하 “업종”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공사에 해당하는 법령의 공사에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 해당 공사에정금액은 공사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업종 해당 공사에정금액은 입찰 공고내용에 따른다.

나.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다.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 등 각 공사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며, 단독입찰의 경우에도 공사에정금액 대비 시공능력공시액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이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 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6조[낙찰자 결정 등]

① 제4조에 의한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7조[제출서류 등]

① 제4조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1,2의 평가기준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구두, 유·무선통신 인터넷 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개시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적격심사 결격]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 별지1 내지 별지2에 의한 평가기준의 “기타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40점)”중 “나호(-20점)”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예정가격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예비가격간 나비는 가급적 크게 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찰이 종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여자 4인에게 각각 1개를 추첨토록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단, 입찰참여자가 4인 미만일 때에는 당해 입찰과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

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본 적격심사 세부기준 내

용 중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기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지1]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30점)

가. 시공경험평가(10점)

◇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10점)

- 입찰공고시 평가기준 규모 및 동일공사 규모 명기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점 수	10	9	8	7	6	5	4

※ 40% 미만인 경우 최저평점은 3점으로 한다.

나. 기술능력평가(8점)

○ 당해 회사 기술자 보유상황

구 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비 율	①	등급계수 6점 이상	등급계수 5점 이상	등급계수 4점 이상	등급계수 3점 이상	등급계수 2점 이상
평 가	②	20인이상 보유	16인이상 보유	12인이상 보유	10인이상 보유	6인이상 보유
점수		8	7	6	5	4

※ 최저평점은 3점으로 한다.

-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을 적용한다.

- 평가비율 ①, ②항 중 적격심사 서류제출에 따라 상대방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 ①항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으로서 건설업무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해당 공종 기술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

자 이상으로 다음 등급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특급기술자 1.0점, 고급기술자 0.75점, 중급기술자 0.5점, 초급기술자 0.25점)

- ②항의 경우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해당 공종 기술자

및 일반기술자를 포함한다.

다. 경영상태평가(12점)

○ 점수 = 세부기준(별표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라. 신인도평가

○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자(+1점)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및 공동수급체에 동 업체가 포함된 경우: -2점

2. 입찰가격평가(70점)

$$\circ 70 - 3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right)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3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여부(-40점)

가. 최근 1년 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0점

나.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3. 기타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

[별지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20점)

가. 시공경험평가(8점)

○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10점)

- 입찰공고시 평가기준 규모 및 동일공사 규모 명기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평가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점수	8	7	6	5	4	3

※ 50% 미만인 경우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위 “가”항의 시공경험이 없거나 불리한 업체에 대하여는

아래 기술능력평가로 대체 가능 (단 만점은 6점)

○ 당해 회사 기술자 보유상황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비 율	①	등급계수 5점 이상	등급계수 4점 이상	등급계수 3점 이상	등급계수 2점 이상
평 가	②	12인이상	10인이상	8인이상	6인이상
점 수		6	5	4	3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을 적용한다.

- 평가비율 ①, ②항 중 적격심사 서류제출에 따라 상대방에

게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 ①항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으로서 건설업무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해당 공종 기술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으로서 다음 등급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특급기술자 1.0점, 고급기술자 0.75점, 중급기술자 0.5점, 초

급기술자 0.25점)

－ ②항의 경우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해당 공종 기술자 및 일반기술자를 포함한다.

나. 경영상태평가(12점)

○ 점수 = 세부기준(별표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다. 신인도평가

○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자(+1점)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및 공동수급체에 동 업체가 포함된 경우: - 2점

2. 입찰가격평가(80점)

$$\text{○ } 80 - 5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1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별지1] 기타 당해 공사 수행 관련 결격여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지3]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 시공실적의 증명 방법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가 내지 마”목의 규정에 적합한 자의 증명으로, 별표5 또는 별표6에 의한 양식으로 증명한다.

2. 1항의 방법에 의한 증명내용을 건설협회에 등록하였을 경우 건설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3.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표5 또는 6에 의한 증명으로 한다.

■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

1.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2.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대한민국내의 공사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3.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4.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5. 대한민국 이외의 공사인 경우는 준공일 기준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전신환매도를 증명서

6. 기타 발주관서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시공실적 심사기준

1. 심사제외 : 기획·설계·공사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2. 실적의 “준공금액” 인정
가. 관급(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실적 규모가 동일 또는 유사한 공사의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실적의 금액만 인정하며, 준공금액·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불인정한다.

나. 대한민국 이외의 공사인 경우는 준공일 기준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매도율로 환산 적용하되, 고시 이외의 화폐인 경우에는 \$(USD)화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 적용한다.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1) 공동수급체를 구성 신청한 경우 구성원 각각의 실적은 각 구성원의 실적(규모 및 금액)에 공사 참여비율(시공비율)을 곱한 실적만 인정한다.

(2) 공공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규모 및 금액의 실적인정은 출자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규모에 대한 인정은 당해회사가 실질적으로

[별표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 점	
		A공사	B공사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 (타인자본/ 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4	4	A. 40%미만 B. 90%미만 C. 14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4.0 3.5 3.0 2.5 2.0	4.0 3.6 3.2 2.8 2.4
나. 최근년도 유동비 율(유동자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	3	A. 120%이상 B. 100%이상 C. 9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3.0 2.6 2.2 1.8 1.4	3.0 2.6 2.2 1.8 1.4
다.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 매출액)	3) 업종별 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	3	3	A. 150%이상 B. 100%이상 C. 4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3.0 2.8 2.6 2.4 2.0
라. 최근년도 총자본 회전율 (매출액/총자본)	4) 업종별평균 총자본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총자본 회전율	2	2	A. 140%이상 B. 100%이상 C. 6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2.0 1.7 1.4 1.1 0.8	2.0 1.8 1.6 1.4 1.2

※ 주: 1) 배점의 'A'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이상 공사의 평가시 적용하고,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의 평가시 적용함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경우 심사항목별 해당업체의 비율이 (+)의 수치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하고, 부(-)의 수치인 경우에는 E등급으로 평가함.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전2)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하며 경영상태 평가시 심사 항목별로 업종 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평균비율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는 A등급으로 평가하고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인정하되, 실적증명서에 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이 기재되고 구성원 전체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3)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경간·접안능력·높이 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지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 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예: 당해 실적이 경간 50m, 길이 200m의 교량이고 지분율 20%일 때 당해지분 실적이 40m이므로 경간 50m 실적은 불인정함)

(4) 분담이행 공동도급의 경우는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3.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

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철강재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1997년 7월 10일 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철강재설치공사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실적은 동일공사 인정에서 제외한다.

다.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인정하며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도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을 인정한다.

4.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 인정 : 총공사 실행공정이 50%를 초과한 경우는 대가지

급과 관계없이 완성(실행) 비율만큼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5.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 동일구조물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시공한 단일 용도의 단위 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단위 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6.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

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후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의 실적은 승계받은 분할부분에 대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사업양수도는 입찰참가 자격에 필요한 업종(면허)을 보유한 사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당해 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정부계약 유권해석 사례

적격심사 당시 배치하기로 한 건설기술자의 변경방법

Q 전문학교이전 신축공사(50억원이상)와 관련하여 당초 적격심사당시 건축기사 1급을 보유한 특급기술자를 배치하기로 하였으나, 직원의 퇴사로 건축기사 2급을 보유한 특급기술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가능한지

A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5의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 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록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적격심사당시 당해 공사현장에 건축기사 1급을 보유한 특급기술자로 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